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13
----------	------

2021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서울특별시장)

1. 제출이유

-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인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며,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1) 건립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시설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2,271㎡
- 공사비 : 총332억원(공사비 293억, 감리비 22억, 설계비 등 19.5억)
- 공사기간 : 2019. 4. ~ 2021. 12.(32개월)
- 개관 : 2022. 1월

2) 시설용도

- 노인요양시설(120명), 주야간보호센터(50명)

구분	층별 용도	면적(단위:㎡)
지상 4층	직원식당, 직원휴게실, 라운지, 주방	252.99
지상 3층	치매전담실(4인실 2개, 2인실 1개, 1인실 1개), 요양실(4인실 12개, 2인실 1개),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사 휴게실	1,629.35
지상 2층	치매전담실(4인실 2개, 2인실 1개, 1인실 1개), 요양실(4인실 11개, 2인실 1개, 1인실 2개),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사 휴게실	1,662.00
지상 1층	데이케어센터(치매전담실), 사무실, 회의실, 공유라운지, 대형프로그램실, 치료실	1,173.73
지하 1층	주차장(101대), 전기, 기계실	3,890.56
지하 2층	주차장(91대)	3,579.33

3)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21.11.1.~2026.10.31.)
 - ※위탁운영 개시일은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 위탁사무
 -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4)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의 필요성
 -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치매 등)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지원, 인지능력 향상, 식사제공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영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가 필요함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 차별성이 있어 현장 경험을 전문적으로 축적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관리·운영의 위탁)

⇒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1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취지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²⁾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³⁾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 마포실버케어센터 설치 현황

-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여 실버케어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 마포실버케어센터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노인요양시설(120명)과 주야간보호센터(50명)를 운영하여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마포실버케어센터 설치 추진경과>

- 2019. 4. 15. : 공사 착공
- 2019. 7. 25. : 서울창업허브단지 시험동 철거 완료
- 2019. 9. 22. : 상하수도, 전기통신선로 이설완료
- 2020. 5. 25. : 토공사 완료
- 2020. 6. 26. : 기초 콘크리트 타설 완료
- 2021. 4. 9. : 골조공사 완료, 형틀 자재 정리 및 내부 조적공사 진행중
- 2021. 12. 14. : 공사 준공(예정)

- 2020년 12월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 13,630명 중 12,323명이 입소하여 충원율이 90.4%이며, 13,148명이 등급판정 후 시설입소를 대기하고 있어 대기율은 96.5%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시립 등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대기율은 185.8%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노인요양시설 현황〉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218	79	7	4	22	46	139	8	131	
종사자(명)	8,554	4,335	932	69	1,059	2,275	4,219	435	3,784	
요양보호사(명)	5,679	2,842	612	42	671	1,517	2,837	295	2,542	
이용자 (명)	정원	13,630	6,681	1,419	92	1,473	3,697	6,949	722	6,227
	현원	12,323	6,194	1,372	87	1,436	3,299	6,129	630	5,499
	충원율(%)	90.4	92.7	96.7	94.6	97.5	89.2	88.2	87.3	88.3
대기자 (명)	인원	13,148	12,415	3,685	378	4,105	4,247	733	459	274
	대기율(%)	96.5	185.8	259.7	410.9	278.7	114.9	10.5	63.6	4.4

나.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장기요양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치매)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하여 식사제공,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능력 향상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마포실버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사무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서비스 제공능력이 중요하며, 관련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민간의 전문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라 할 것임.
- 동 위탁사무의 특성상 장기요양의 특성과 요양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실버케어센터 사무에 대한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의 사유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마포실버케어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⁴⁾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13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고령화 및 치매 어르신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요대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인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하며
- 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립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시설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2,271㎡
- 공사비 : 총332억원(공사비 293억, 감리비 22억, 설계비 등 19.5억)
- 공사기간 : 2019. 4. ~ 2021. 12.(32개월)
- 개관 : 2022. 1월

나. 시설용도

○ 노인요양시설(120명), 주야간보호센터(50명)

구 분	층별 용도	면적(단위: m ²)
지상 4 층	직원식당, 직원휴게실, 라운지, 주방	252.99
지상 3 층	치매전담실(4인실 2개, 2인실 1개, 1인실 1개), 요양실(4인실 12개, 2인실 1개),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사 휴게실	1,629.35
지상 2 층	치매전담실(4인실 2개, 2인실 1개, 1인실 1개), 요양실(4인실 11개, 2인실 1개, 1인실 2개),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사 휴게실	1,662.00
지상 1 층	데이케어센터(치매전담실), 사무실, 회의실, 공유라운지, 대형프로그램실, 치료실	1,173.73
지하 1 층	주차장(101대), 전기, 기계실	3,890.56
지하 2 층	주차장(91대)	3,579.33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21.11.1.~2026.10.31.)

※위탁운영 개시일은 협의에 의해 변동 가능

○ 위탁사무

-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의 필요성

-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성질환(치매 등)이 있는 경우 신체활동지원, 인지능력 향상, 식사제공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가 필요함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 차별성이 있어 현장 경험을 전문적으로 축적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관리·운영의 위탁)
⇒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1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이성주 (☎2133 -7420)